

#### [서식 예]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

# 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△지방경찰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####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 ○ . .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(제2종 보통 경기 ○ ○ ○ ○ ○ ○ ) 취소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1900년 제2종 자동차운전면허(제1종 보통 경기 00-0000-00)를 취득하였습니다.
- 2. 그런데 원고는 20〇〇. 〇. 〇. 01:56 경 〇〇시 〇〇구 〇〇길 〇〇호텔 앞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어 이에 응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.11%가 나왔습니다. 그리하여 피고는 같은 해 〇. 〇.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.



- 3. 그러나 피고의 위 행정처분은 다음에서 보는 이유와 같이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입니다.
  - 가. 원고는 ○○시 ○○구 소재 ☆☆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인바 사건 전날 ○○시 ○○구 소재한 거래처인 ★★회사의 사장의 아버지가 심 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위 ☆☆회사의 사장 김□□이 원고에게 부의금을 주면 서 직접 전달하라고 하여 이에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서울 ○○거 ○○○○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0:00경 ○○으로 내려갔습니다.

그리하여 ○○○에 위치한 ○○○ 부속병원에 21:50 경 도착하여 부조금을 건네주고 문상을 드린 후 잠시 앉아 있자 마침 우연히 ○○에 있던 지사에 서 회사동기인 신□□이 문상을 드리러 와서 반가운 마음에 만나서 소주를 1병정도 나누어 먹었습니다.

○○시로 올라와야 했기 때문에 한시간 가량 있은 후 서울로 출발하여 사건 당일 1:30경 ○○시로 들어 왔습니다. 그리하여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 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.

- 나. 원고가 개인적인 일로서 대전에 간 것이 아니었으며 업무상 상관의 지시로 내려가서 둘이서 소주 1병을 마셨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혈중알콜농도가 0.1%가 넘었던 것입니다. 상가에 문상을 가서 술을 몇 잔 정도 먹었던 것이 었으나 원고가 장시간 운전을 하고 피곤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알콜이 미쳐다 분해되지 못하였던 점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.
- 다. 원고는 이제 30살의 나이로서 직장에 입사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아니하며 신입사원으로서 차량을 운전해야 할 일이 많은 관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면 회사에서 퇴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- 4. 원고가 여태까지 아무런 음주와 관련한 전력이 없는데다가 회사의 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문상을 갔다 오던 중에 본 건 음주운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운전면허처분취소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소송을 제기합니다.

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1. 갑 제2호증

주취운전자 적발내용

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



1. 갑 제3호증

1. 갑 제4호증

1. 갑 제5호증

1. 갑 제6호증

1. 갑 제7호증

1. 갑 제8호증

임시운전증명서

사업자등록증

재직증명서

진술서

탄원서

주민등록증사본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1. 소장부본

1. 납부서

각 1부

1부

1부

2000년 0월 0일

원 고 ㅇㅇㅇ (인)

# ○ ○ 행정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 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		

#### 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①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#### 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